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의 문서입니다.

정식 문서는 보건소가 발행한 일본어 문서입니다.


⑨ 일반 결핵의료에 대한 의료비 공비부담 제도 (37 조 2)


대상자

- 결핵지정 의료기관에서 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에게 감염 시킬 우려가 없는 분
- 결핵이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중에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분

★ 대상이 되는 의료비 (결핵치료에 관한 것)

• 화학요법 (약물에 의한 치료) • 외과적요법 (수술 등) • 골관절결핵의 장구요법•엑스선•CT 검사, 결핵균검사, 부작용발견을 위한 검사 (혈액검사 • 안과검사 • 이비과검사) 등에 필요한 비용.

• 외과적 요법 • 골관절결핵의 장구요법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의 비용 일부와 그 처치비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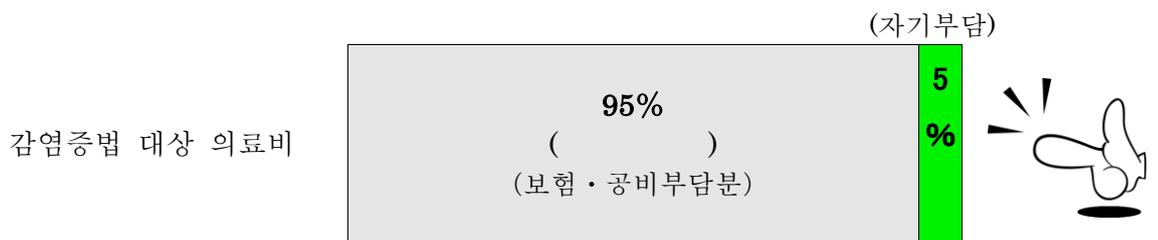
(주) 초진료 • 재진료, 지도료, 진단서료 • 협력료는 공비부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
★ 신청에 필요한 서류 (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보건소로 제출됩니다.)

- 1 결핵의료비 공비부담 신청서 • 진단서
- 2 엑스선 직접촬영사진 (신청 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것)

★ 자기부담액

대상이 되는 의료비 중, 95%는 환자 가입보험과 공비에 의한 부담이 되고 나머지 5%가 자기부담이 됩니다.



[환자표]를 의료기관 • 결핵약을 받는 약국에 제시하십시오.

의료비 공비부담은 [공비부담 신청서] 보건소 수리일이 개시일로 됩니다.

문의 • 상담은 . . .

